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 등급
월 한도액 (원)	<u>2,306,400</u>	<u>2,083,400</u>	<u>1,485,700</u>	<u>1,370,600</u>	<u>1,177,000</u>	<u>657,400</u>

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인”을 “동 시간대에 2인”으로,
“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”를 “급여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
단서 중 “동시 또는 순차적으로”를 “동 시간대에”로 한다.

제17조제6항제5호 중 “고시 제57조제2항”를 “제5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류번호	분 류	금액(원)
가-1	30분 이상	<u>16,940</u>
가-2	60분 이상	<u>24,580</u>
가-3	90분 이상	<u>33,120</u>
가-4	120분 이상	<u>42,160</u>
가-5	150분 이상	<u>49,160</u>
가-6	180분 이상	<u>55,350</u>
가-7	210분 이상	<u>61,670</u>
가-8	240분 이상	<u>68,030</u>

제19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 그 사유를 급
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류번호	분 류	금액(원)
나-1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	<u>86,480</u>
나-2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	<u>77,970</u>
나-3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<u>48,690</u>